



2020. 07. 21.(화) 10:00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14
-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 ---- 32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강 호

의안번호	2861
------	------

##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 2020. 07. 10.
- 발의자 이정임 의원

### [제정이유]

- 제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제천 맛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맛집의 지정(안 제5조)
- 맛집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맛집 선정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 [참고사항]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입법예고}

- 기 간 : 2020. 6. 3. ~ 2020. 6. 2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음식 관광 자원을 마련하고 관광객을 제천시로 유인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함.

### < 관 계 법 령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

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삭제 <2016. 1. 22.>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향아리, 뚜껑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의안번호	2862
------	------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 2020. 07. 10.
- 제출자 제천시장

### [개정이유]

-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및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지원 등 기업 유치 과정에 주로 적용되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통하여 타시군과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 및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충북도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개정(안 제19조, 별표2)
  - 투자금액산정 대상 명확화
    -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 타 시·도 기업 이전 요건 완화(별표2)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요건 완화(30인 -> 10인)

○ 공장 신·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개정 및 신설(안 제20조)

[개정]

- 사업계획서 상시고용예정인원 20명 이상 → 10명이상
- 2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토지매입비 제외) 7% 범위내(한도 10억원)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토지매입비 제외) 10% 범위내(한도 10억원)

[신설]

- 국내 3년이상 공장 가동중이며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공장 신증설시 총투자금액 10억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한도 50억원)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개정 규정 반영

[보조금 지원 대상 제한](안 제26조)

- 보조금 지원대상을 시와 사전협의하여 투자협약 체결한 업체 한정

[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27조의3)

- 연구원 1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시 10명 초과 연구원 1인당 1년 범위내 월 200만원내 지원(기업당 한도 5억원) (충북도 조례 개정사항 반영)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입법예고}

○ 기 간 : 2020. 6. 5. ~ 6. 25.(20일)

○ 제출의견 :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도 조례 개정 및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등 기업 유치 과정에 주로 적용되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타 시·군과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일부개정 2019. 01. 08.]

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②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안번호	2863
------	------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 2020. 07. 10.
- 발의자 제천시장

### [개정이유]

-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의 카라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책정

### [주요내용]

- 카라반 사이트 시설사용료 추가(별표 1)

### [참고사항]

{관계법령}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6. 05. ~ 06. 2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용두산 오토캠핑장에 카라반을 설치함에 따라 오토캠핑장 카라반 시설 사용료 책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관 계 법 령 > —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별표 6] <신설 2014.4.4.,2019.10.11.>

관광 레포츠 시설물(청풍호 오토캠핑장)이용료(제8조 관련)

사용기준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7~8월)	주말, 공휴일 (금, 토, 공휴일 전일)	평일 (월~목)	
1박2일 (1개소/ 1대당)	오토캠핑사이트	40,000원	35,000원	30,000원	35면
	캐라반사이트	150,000원	100,000원	80,000원	3대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2:00 ~ 다음 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초과 1일 사용료 추가)
- ※ 전기사용료, 샤워실 이용요금 포함
- ※ 평일에 단체이용자(10개 면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20% 감면
- ※ 제천시민은 신분증 제시자에 한하여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의안번호	2864
------	------

##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2020. 07. 10.
- 제 출 자 제 천 시 장

### [개정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 성격인 새뜰마을사업 포함 개정(안 제1조)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정(안 제2조)
  -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공동 텃밭 등)
  -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관리사무소, CCTV 등)
  -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협동조합, 마을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마을공방, 매점, 숙박, 세탁 등)
-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학습·회의 공간, 운동시설 등)
- 공익목적의 기준을 규정 (안 제20조)
  -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 마을의 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개정(안 제21조)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등), 마을회 등 주민단체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개정(안 제22조)

##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5. 13. ~ 06. 0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관 계 법 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1.~9. (생략)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12. (생략)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의안번호	2867
------	------

##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제출 일 2020. 07. 10.
- 제출자 제천시장

###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제천 서부동 지역은 과거 도시의 대표 상권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도시 외곽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지역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거복지에 취약한 상황이고 특히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
- 따라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토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안전문제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명 : 서부동 다시 희망 쌓기
- 위치 : 제천시 서부동 43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
- 면적 : 87,000km<sup>2</sup>
- 주요사업 :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등
- 사업비 : 총312.53억(마중물사업 134억) ※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추진경위]

- 2019. 11. ~ : 용역 발주
- 2019. 12.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컨설팅 및 자문 등 지속 추진  
- 충청북도, 도시재생 관계 전문가 등
- 2020. 2. ~ : 주민협의체 구성에 따른 의견수렴
- 2020. 3. ~ : 관련부서 협의
- 2020. 6. 1. :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
- 2020. 7. 3. : 2020년 광역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서 제출

## [향후 추진 계획]

- 2020. 7. 15. : 광역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면평가
- 2020. 7. 27. : 광역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평가
- 2020. 8. 7. : 광역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평가(최종)
- 2020. 10월말 : 도시재생특위 심의, 사업선정 및 발표

##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검토의견]

-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되어 온 서부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와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전개하는 것으로
- 특히, 이 지역은 이미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무산되었고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여 주민들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내야 하며, 지역 특성 상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정책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 관계 법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8. 2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의안번호	2865
------	------

##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출일 2020. 07. 10.

○ 제출자 제천시장

### [제안이유]

- 청풍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내 2층을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문화공간으로 지속 운영하고
- 만남의 광장 관광지 및 청풍호 일원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기본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명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문화공간으로 운영</li> <li>■ 공개모집을 통해 유명 문화예술인 선정 및 위탁</li> <li>■ 위수탁자 상호이익조건 충족 : 수탁공모시 조건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자(제천시) : 문화예술인 유치, 관광자원화 및 제천 이미지 제고</li> <li>- 수탁자(예술인) :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보</li> </ul> </li> </ul>
위탁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li> <li>■ 건물현황 : 일반철골조 2층/ 연면적 396.19㎡/ 주용도: 문화및집회시설</li> <li>■ 위탁시설 : 관광정보센터 2층 113.25㎡, (제2종근린생활시설)</li> </ul>

수탁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에서 상시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년2회이상 자체문화행사 기획 또는 시주최 문화행사 참여가 가능한 예술인으로 제천시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li> </ul>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및 시청 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받은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기관 선정</li> <li>■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관계공무원, 전문가 6인이상 9人以下로 구성(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수의 과반수미만), 심의</li> </ul>
위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위탁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조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 “5년이내”로 규정)</li> </ul>
수탁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시설중 수익공간 70.5㎡에 한해 위탁료 산정 부과</li> </ul>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익공간 포함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수탁자 부담</li> </ul>
운영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공제보험 가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시- 영조물 공제가입</li> <li>■ 영업배상보험 필요시 수탁자 자체 가입</li> </ul>
문화공간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li> <li>■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li> </ul>
협약및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자 선정후 위수탁협약 별도 체결, 협약서 공증</li> </ul>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0. 07. : 제천시의회 동의
- 2020. 08.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08.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0. 08.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

##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문화공간을 문화예술 전문인에게 위탁관리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증대
- 문화예술인 자체가 관광 자원화하는 효과를 거두어 제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위탁시설 중 수익공간에 대한 수탁료 부과로 세외수입 재원 확보

## [참고사항]

{관련조례}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별첨}

-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문
- 청풍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위탁운영방안 검토보고

##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2층을 문화예술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상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됨.

### < 관련 조 례 >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청풍만남의광장관광정보센터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정보센터문화공간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일

제 천 시 장

### 1.위탁대상 시설

- 명 칭 :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2층)
- 위 치 :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 구 조 : 일반철골조 2층구조
- 위탁시설 : 2층 113.25㎡(제2종근린생활시설)

### 2.위탁관리조건

- 위탁기간 : 계약일부터 3년간(※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수탁료 : 수익공간(일반음식점, 주방, 화장실) 70.5㎡에 한해 유료 위탁

### 3.신청자격

-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년 2회이상 자체문화행사 기획 또는 시주최 문화행사 참여가 가능한 예술인으로 제천시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4.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08. . ~ 2020. . . 매일 09:00 ~ 18:00까지(공휴일제외)
- 접수장소 :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도로295(천남동)  
제천시청 관광미식과 관광기획팀(본관3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시 등록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소정양식 참조)
- 기타붙임서류 : 신청서식의 첨부서류 참조

#### 5.수탁자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 (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 미만)
  - 심의위원회 개최 : 2020. 07월중.
- 심의 및 선정 방법
  - 제출서류를 근거로, 별첨 수탁자선정심사점수산출기준에 따라,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관광활성화 효과 등 수탁능력 평가
  -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후 합산 평가
  - 평가점수 합산결과 동점시에는 문화예술활동 경력점수가 많은 자, 제천시거주자 순으로 선정
  - ※단,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심의위원별 심사점수산출기준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및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가부 의결
- 평가기준 : 별첨 수탁자선정심사점수산출기준 참조
- 수탁자 선정 이후 조치사항
  - 수탁자로 결정된 후 수탁자는 10일이내에 제천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받아 각 1부씩 보관

##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관광과 관광기획팀으로 문의  
(☎ 043-641-6706)

## 7. 붙임

- 신청서식 1부.
- 문화공간 수탁자선정심사접수산출기준 1부.

“붙임”

#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수탁신청서

- 성명(법인·개인 명) :
- 주 소 (소재지) :
- 주민번호 (법인번호) :

위 본인(또는 법인)은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수탁운영자 공모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법인·개인 대표자명) : ①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점수산출관련 증빙서류 사본 등 각 1부.
3. 인감증명 1부.

제천시장 귀하

“붙임”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수탁자선정심사점수산출기준(1000점만점)

**운영관리 및 관광활성화 능력(600점)**

심사항목		배점	평점	비고
가.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250)		
0. 수			250	
0. 우			200	
0. 미			150	
0. 양			100	
0. 가			50	
나. 예상수입 및 수지분석의 타당성		100		
0. 수			100	
0. 우			90	
0. 미			80	
0. 양			70	
0. 가			60	
다. 관광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250)		
0. 수			250	
0. 우			200	
0. 미			150	
0. 양			100	
0. 가			50	

**문화예술활동 경력 및 향후 계획(400점)**

심사항목		배점	평점	비고
라. 활동 경력(증빙서류 참고)		(300)		
0. 26년 이상			300	
0. 21 ~ 25년			250	
0. 16 ~ 20년			200	
0. 11 ~ 15년			150	
0. 05 ~ 10년			100	
마. 연간 문화예술활동 계획		(100)		
0. 연간 5회이상			100	
0. 연간 2회이상			50	

※ 점수가 동점일 경우 문화예술활동 경력점수가 많은 자, 제천시거주자 순으로 선정



문서번호	관광미식과-9157
등록일자	2020. 07. 08.
결재일자	2020. 07. 08.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관광기획팀장	관광미식과장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부시장	시장
조형주	정상진	권기천	엄세진	허경재	2020. 7. 8. 이상천
협조					

##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위탁운영방안 검토보고

### << 결재요약전 >>

- 시설명 : 청풍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 위치 :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50길 6
- 건물현황 : 일반철골조 지상2층 연면적396.19㎡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위탁시설 : 관광정보센터 2층 113.25㎡(제2종 근린생활시설)
- 위탁기간 : 3년 위탁 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조건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및 승인(7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8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8월)
  - 위수탁계약 체결 및 운영(9월)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관광과미식과)

-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

# 위탁운영방안 검토보고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내 2층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만남의광장 관광지 및 청풍호 일원의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문화공간으로 지속 운영 ”

## I. 시설 및 운영 현황

### □ 시설 현황

- 명 칭 :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관광정보센터 2층)
- 위 치 :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청풍면 교리 147)
- 규 모 : 113.25㎡(관광정보센터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구)홍민의집  
관광정보센터 : 일반철골조2층 /연면적396.19㎡ /주용도:문화및집회시설
- 준 공 일 : 2006. 09. 26.
- 소 유 자 : 제천시

### □ 운영 경과

- 2005. 8. 1. ~ 2006. 7. 31.(1년) 매점 운영 (사용수익허가)  
\*계약기간(2008.7.31.) 종료전 운영 포기
- 2006. 8. 1. ~ 2010. 9. 14.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함
- 2006. 9.15. ~ 2013. 9. 14.(3년) 1차 민간위탁 (홍민의집 운영)
- 2013. 9.15. ~ 2015. 9. 14.(2년) 민간위탁재계약 (홍민의집 운영)

○ 2016. 01.01. ~ 2018. 12. 31.(3년) 2차 민간위탁 (홍민의집 운영)

## II . 운영방안

### □ 운영방침 : 문화공간으로 민간위탁 운영

- 청풍호반의 중심지 만남의광장을 찾는 관광객이 휴식을 취하고 나아가 문화예술활동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
- 2차에 걸친 문화공간으로 위탁운영한 결과, 관광객의 휴게공간 제공 및 지역관광 안내를 통한 관광객 편의제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자체가 관광자원화하는 효과를 거두어 관광객 유인효과가 상당했다고 판단, 해당 공간을 유명 문화예술인에게 예술문화공간으로 민간위탁하여 지속적인 관광활성화 효과 고양

### □ 위탁근거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 위탁운영(안)

구 분	내 용	비고
위탁시설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li> <li>■ 건물현황 : 일반철골조 2층/ 연면적 396.19㎡ / 주용도: 문화및집회시설</li> <li>■ 위탁시설 : 관광정보센터 2층 113.25㎡, (제2종근린생활시설)</li> </ul>	
기본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명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문화공간으로 운영</li> <li>■ 공개모집을 통해 유명 문화예술인 선정 및 위탁</li> <li>■ 위수탁자 상호이익조건 충족 : 수탁공모시 조건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자(제천시) : 문화예술인 유치, 관광자원화 및 제천 이미지 제고</li> <li>- 수탁자(예술인) :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보</li> </ul> </li> </ul>	

수탁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에 솔활동을 하면서 년2회이상 자체문화행사 기획 또는 시주최 문화행사 참여가 가능한 예술인으로 제천시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li> </ul>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및 시청 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받은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기관 선정</li> <li>■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관계공무원, 전문가 6인이상 9人以下로 구성(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미만), 심의</li> </ul>	

구 분	내 용	비고
위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위탁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조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 “5년 이내” 로 규정)</li> </ul>	
수탁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시설중 수익공간 70.5㎡에 한해 위탁료 산정 부과</li> </ul>	
운영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익공간 포함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수탁자 부담</li> </ul>	
운영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공제보험 가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시- 영조물 공제가입</li> <li>■ 영업배상보험 필요시 수탁자 자체 가입</li> </ul>	
문화공간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li> <li>■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li> </ul>	
협약 및 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자 선정후 위수탁협약 별도 체결, 협약서 공증</li> </ul>	

## □ 일정계획

-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방안 확정 '20. 07.
- 민간위탁방안 시의회 동의(제천시의회 291회) '20. 07.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20. 08.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선정 '20. 08.
- 위수탁계약 체결 및 운영 '20. 09.

붙임 의회동의안 및 수탁기관 모집 공고안 각 1부. 끝.₩

의안번호	2866
------	------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

- 제출 일 2020. 07. 10.
- 제출 자 제 천 시 장

### [제안이유]

- 수리농업 발상지인 의림지(뜰)의 고유한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공간 활용성 증대, 전통농업에서 21C형 집약농업으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 의림지뜰이 갖는 공익적이고 역사적인 다원적 가치 활용, 친환경 농업 실현, 미래농업 도입을 통한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 치유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부가치화 등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이 필요함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검토·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특구명칭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 특구위치 :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의림지뜰)
- 특구면적 : 1,954,400m<sup>2</sup>

특화사업	세부사업	면적(m <sup>2</sup> )	사업비(백만원)
합 계		1,954,400	160,000
㉠ 친환경영농단지 조성	① 친환경영농단지 조성	1,320,394	3,680
㉡ 자연치유단지 조성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 수립대상	② 의림맞이뜰 조성	58,548	20,239
	③ 고운자연뜰 조성	59,380	14,483
	④ 정원누림뜰 조성	104,740	30,893
	⑤ 도담체험뜰 조성	95,583	31,905
	⑥ 농업마루뜰 조성	50,995	17,319
	⑦ 치유누리뜰 조성	52,804	20,279
	⑧ 라온놀이뜰 조성	49,102	16,034
	⑨ 협재열차 조성	(12,117)	3,456
	⑩ 의림지물길재현	(9,224)	1,712
㉢ 기타 (기결정 도로 및 광장)		162,854	-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7년)
- 총사업비 : 1,600억원 (조달방법: 국비, 도비, 시비, 민자)
- 특화사업자 : 제천시장
-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2항)
  - 2) 「농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 제2항)
  - 4)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 5) 국유,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2항)

-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항)
- 8)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 9)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10)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법 제65조 제1항 제4호)
-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2020년 ~ 2026년
-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 [추진경위]

- 2018. 07. : 핵심공약사업 추진 결정(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 2018. 07. : 관광미식과내 드림팜랜드팀(팀장6급) 신설
- 2019. 01.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단장 4급) 신설
- 2018. 09. ~ 2019. 06. : 종합계획수립(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 수요조사, 시민설명회 개최
- 2019. 10. ~ 2020. 07.(현재):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수립(개발계획)
  -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협의, 시의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 수요의향조사 등

### [향후 추진 계획]

- 2020. 07. : 주민의견 등 청취(공청회)
- 2020. 07.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08.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중소벤처기업부)
- 2020. 12.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승인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020. ~ 2026. :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조성공사
- 2027. ~ :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운영

## [참고사항]

{관계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조(목적)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검토의견]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계획은 제천의 대표 관광지인 의림지권 관광 개발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타당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관 계 법 령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